

알고계십니까?

비상구 폐쇄 등

위반 행위 신고포상제

비상구 등 피난·방화시설 유지관리
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**300만원 이하**의
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

비상구 폐쇄·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
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
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.

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

다중이용업소, 판매시설, 복합건축물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
문화집회시설, 의료시설, 위락시설

주요위반사례



도어스토퍼 설치



도어클로저 훼손



물건적치



비상구폐쇄

-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·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
- 계단,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
-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